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0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이학영・임호선・진선미

박정현 • 이수진 • 한정애

김영배 · 한민수 · 전재수

김성환 · 윤호중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 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 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 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2(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하도급거
	래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
	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수급사업자가 근로
	자 또는 자재 납품업자에게 지
	급하는 임금, 자재대금 등이 적
	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 개설,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
	설의 기준, 대금지급 확인시스
	템의 구비요건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제25조(시정조치) ①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	
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u>제14조</u>	<u>제14</u>

<u>부터 제16조까지</u> , 제16조의2>	세1
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끼	-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	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
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빈	- 행
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
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②・③ (현행과 같음)